

로 보기 어려우며 경제적 성과와 연계 효과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일본형 지방소비세는 국가가 징수한 국세에 부가되어 그 세입을 공유(revenue sharing)하는 공동세적 성격이며, 따라서 지방이 과세대상과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관리하고 세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순수한 지방세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세수가 수도권에 많이 배분되는 점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배분하는 경우 현행의 지방교부세와 차별성에 대한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III. 참여정부 지방세제 개혁의 향후 방향

1. 지방세제 개혁의 기본방향

앞에서 지방세제 개혁방향의 논의에서 세가지 주요 논점을 논의한 바 있다. 세가지 논점에서 본 지방세제 개혁의 기본방향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총량배분과 관련하여 현행 배분비율을 변경하여 지방재정을 더 확충할 것인가의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추가적 배분을 원하는 상황이고, 중앙정부 입장은 추가적 배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에의 추가적 배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에 이양될 경우 추가적 재정배분이

가능하다는 점은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총량배분의 변경은 이익정치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정치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지방분권이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재정에의 추가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서의 자주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 원칙의 적용문제이다. 앞에서 찬반 논거를 살펴보았는데 학계에서는 분권의 기본정신에 따라 자주재원주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세원 이양을 통해 자율적 재정운용 능력을 높여주되, 재정력 불균등은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를 재구성할 때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분리 방식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세원공유 방식에 의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 논점을 보면 현행 세원분리 방식을 세원공유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커다란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세원배분체계도 세원공유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개혁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지방세 개혁은 국세,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지방소비세의 도입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과제의 핵심